

December 23, 2016

2017년 개정세법 - 국제조세 관련 주요내용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추가,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외예금 증여시 과세방법의 변경 등]

2016. 12. 20. 공포된 세법의 개정내용 중 국제조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정부는 OECD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1조를 개정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범위에 국가별보고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범위 •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제출하며 미제출이나 거짓 제 출시 3천만원 과태료 부과	■ 국가별보고서 추가 • (좌동) • 국가별보고서 - (제출대상자)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인 내국법인으로서 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 조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제출대상특례)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작성의무가 없거나 국가별보고 서 교환이 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하는 등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국내자회사 또는 국내지점에 제출의무 부여 - (작성내용)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거주법인 목록 등 • 제출기한 - 모회사 사업연도말로부터 12개월 이내

위 개정규정은 2017.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다국적기업의 개별기업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 제출제도 개선

개정된 국조법에서는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제출서류와 개별기업보고서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고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개별기업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 제출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 정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의무 면제 (국조법시행령 제21조의2 개정 예정)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분에 대한 개별기업 보고서 제출 면제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국조법 제11조)	-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 → 사업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

위 개정규정은 2017.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개정된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은 내국법인과외국법인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공제 • (이월공제 기간) - 10년 • (공제한도) - 없음	■ 공제한도 신설 • (좌동) • (공제한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위 개정규정은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4.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내 거주자(대주주에 한정)가 이민 등 국외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9 내지 제118조의18).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 신 설	■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는 대주주의 국내주식 • (과세표준) - 출국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차익 • (세율) - 20% •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추후 주식양도시 가격이 출국시보다 하락한 경우 세액공제 허용 • (신고·납부기한) -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 (납부유예 및 환급) - 납세담보 설정, 납세관리인 지정등 요건 충족시 5년간 납부유예가 허용되며 5년 내 국내 재전입등으로 거주자가 되는 경우 환급

위 개정규정은 2018. 1. 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특례세율을 19%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적용기간) -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5년간(2016.12.31. 까지만 적용) • (특례내용) - 종합과세 대신 17% 단일세율 선택 허용 • 적용기한 : 2016.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 (적용기간) - 2019.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 (특례내용) -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 적용기한 : 2018.12.31.

위 개정규정은 201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

개정된 법인세법(제98조의4, 제98조의5, 제98조의6) 및 소득세법(제156조의2, 제156조의4, 제156조의6)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경정청구 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 •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 3년 → 5년 이내

위 개정규정은 2017. 1. 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7.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국외에서 수행된 기술용역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인적용역소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 국내에서 다음의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㉔ 연예인, 직업운동가, 자유직업가가 제공하는 용역 - ㉕ 과학기술·경영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기술용역 등) ※ 원천징수세율: 지급액의 20%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다만,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기술용역등(㉕)의 소득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 ※ 원천징수세율: 지급액의 3%

위 개정규정은 2017. 1. 1. 이후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8.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등 증여시 과세 방법 변경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합니다) 제4조의2 및 국조법 제2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예금 등 증여시 과세방법을 수증자(비거주자) 과세방식에서 증여자(거주자)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 • 비거주자 - 국내 소재 재산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① 국외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 ② 국내소재재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방법 변경 • 비거주자 - (좌동) - 상증세법에서 해당 내용 삭제 후 국조법으로 이관 ※ 국외예금 등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수증자인 비거주자 → 증여자인 거주자

위 개정규정은 2017.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46	E-Mail. hjikim@shinkim.com
● 노형철 세무사	TEL. 02 316 4483	E-Mail. hcrho@shinkim.com
●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TEL. 02 316 4219	E-Mail. ihchung@shinkim.com
● 이정진 전문위원	TEL. 02 316 4417	E-Mail. jjlee@shinkim.com